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01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김 윤 · 김원이 · 백혜련
이수진 · 서미화 · 박홍배
박주민 · 임미애 · 김우영
이훈기 · 남인순 · 정혜경
김남근 · 윤건영 · 김승원
오세희 · 한창민 · 권칠승
김교홍 · 최혁진 · 이재강
이용선 · 정일영 · 한준호
이광희 · 송재봉 · 조인철
김남희 의원(2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뽕뽕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뽕뽕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함.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제48조의2).

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2).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3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및 제23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6호) 및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이송”을 각각 “이송·전원”으로 한다.

3의2. “최종치료”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의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최종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의2. “응급의료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 및 응급의료자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단계 및 범위를 구분하여 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6. “이송”이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원”이란 응급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응급의료종사자의”를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등의”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피하지 못한다”를 “기피·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또는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소생과 진단 및 검사를 포함한 응급의료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용불가 사전고지) ① 응급의료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고지를 받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는 그 내용을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은 수용불가 사전고지 상황이 해소된 경우, 그 사실

을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관할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수용불가 사전고지 절차, 전담인력 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료의뢰·환자이송의”를 “진료의뢰의”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이송”을 각각 “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를 “전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환자 전원 조정 체계에 따르며,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응급이송”을 “응급이송·전원”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이송”을 각각 “이송·전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역량 강화 계획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를 “응급의료진료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내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최종치료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13조의5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응급의료진료권 지정의 적정성
7.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
8.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적정성
9. 제31조의4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

제13조의6제2항제3호 중 “이송”을 각각 “이송·수용·전원”으로 “검토”를 “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의 조정
6.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8.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 등 배치 및 운영 기준

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를 “그 밖에 실태조사”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
2.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격차 및 이송·수용·전원 체계 분석

3.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환자의 이용 실태 및 의료 접근성 평가
4.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관련 시설·장비 등의 공급 및 활용 실태
5. 그 밖에 응급의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 전단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이송·전원정보시스템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이송·전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
2.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가용 시설, 인력, 장비 및 응급환자 진료 능력
3.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불가 사전고지 여부 및 사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 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받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공유된 정보는 응급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를 “업무의 내용·결과, 제6조의2에 따른 수용불가 사전고지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 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의 수용률 및 최종치료율
2. 응급환자 진료의 최종 성과
3.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의 성과 개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항목별로 원가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송하였을”을 “이송·전원하였을”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응급의료기관등”을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전원 조정,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총괄하여야 한다.

②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 단위의 응급환자 전원 조정 및 상황 관리

2. 전국 전원 조정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요청에 대한 협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원 조정 및 응급의료자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진료권별 전원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의 전원 조정 및 상황 관리

2. 관할 권역 내 전원 조정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관할 권역 내 119구급대의 이송 요청에 대한 협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단위의 전원 조정 등에 관한 업무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송”을 “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의”를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로,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1.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의료 및 최종치료

제29조제1항 중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를 “심장·심

혈관·뇌혈관질환자,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절차 등은 적정 진료 가능 여부, 지역별 의료수요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송”을 “전원”으로 한다.

1.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등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송”을 “전원”으로 한다.

1.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경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31조의4제1항 중 “이송·진료”를 “이송·전원·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자의 이송”을 “환자의 이송·전원”으로, “이송체계”를 “이송·전원체계”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이송”을 “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분류·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을 “그 밖에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당직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기 위하여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은 제1항의 당직전문의등에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은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당직전문의등의 응급의료진료권별 배치 및 운영 기준은 시·도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당직일수, 주당근무시간, 당직 후 휴게시간, 당직수당 등 근무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응급환자 이송 등”을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등”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송”을 “인계”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환자이송”을 “환자이송·전원”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중 “이송 및 응급처치”를 “이송·전원 및 응급처치”로, “항공이송”을 “항공이송·전원”으로,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송”을 각각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 체계) ① 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은 제31조의4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 필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하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한다.

③ 응급환자의 전원제에 관한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가 담당한다.

④ 그 밖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절차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응급환자 이송정보의 제공)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구급대원을 말한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이송”을 각각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54조의2 중 “이송”을 “이송·전원”으로 한다.

제54조의3 중 “응급이송”을 “응급이송·전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제6조2항”을 “제6조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제3항”으로,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를 “기피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장과 응급의료종사자”로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1항 중 “제공하는”을 “제공한”으로,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기준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 구조(救助) · <u>이송</u>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 ----- ----- ----- ----- ----- ----- ~~이송~~ · <u>전원</u> ----- -----.
3. (생 략)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3의2. “최종치료”란 <u>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의 응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의 포괄적인 의료행위를</u>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최종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생 략)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

5의2. “응급의료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 및 응급의료자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단계 및 범위를 구분하여 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6. “이송”이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원”이란 응급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
-----이송 · 전원-----

-----이송 · 전원-----
-----.

9. (현행 제7호와 같음)

10. -----

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생략)

<신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신설>

<신설>

-----이송·전원-----
-----.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등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또는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소생과 진단 및 검사를 포함한 응급의료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기피·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수용불가 사전고지) ① 응급의료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고지를 받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는 그 내용을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은 수용불가 사전고지 상황이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관할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

	<u>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⑤ 그 밖에 수용불가 사전고지 절차, 전담인력 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u>의뢰</u>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u>진료의뢰·환자이송의</u>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u>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 ----- ----- -----<u>의뢰</u> 할 수 있다. ② <u>진료의뢰의</u>----- ----- -----. <삭 제> 제11조(응급환자의 <u>전원</u>) ① --- ----- ----- ----- -----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

-----전원-----

-----.

② -----
-----전원-----

전원-----

-----전원-----

-----.

③ -----전원-----

④ -----전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제48
조의2에 따른 응급환자 전원
조정 체계에 따르며, 그 밖에-----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

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이송·전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2(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u>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u> <u>·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u>응급이송수단의 확보</u>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 ----- ----- <u>응급이송</u> <u>· 전원</u> ----- ----- ----- --.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 -----.

1. (생략)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u>이송</u>자원의 육성 및 <u>이송</u>체계의 개선 계획 <신설> 나. ~ 바. (생략)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생략)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u>시·도</u>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u>이송</u> 체계 마련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 가. -----<u>이송·전원</u>----- -----<u>이송·전원</u>----- ----- 나. <u>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역량 강화 계획</u> 다. ~ 사. (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응급의료진료권</u>----- ----- -----. 1. (현행과 같음) 2. ----- ----- -----<u>이송·전원</u>----- 3.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u>4. 지역 내 응급의료진료권별</u>
	<u>응급의료·최종치료 역량 강</u>
	<u>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u>
<u>4.·5. (생 략)</u>	<u>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u>
	<u>같음)</u>
<u>③ ~ ⑤ (생 략)</u>	<u>③ ~ ⑤ (현행과 같음)</u>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u>① ~ ⑤ (생 략)</u>	<u>① ~ ⑤ (현행과 같음)</u>
<u>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u>	<u>⑥ -----</u>
<u>사항을 심의한다.</u>	<u>-----.</u>
<u>1. ~ 5. (생 략)</u>	<u>1. ~ 5.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6. 응급의료진료권 지정의 적정</u>
	<u>성</u>
<u><신 설></u>	<u>7.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u>
	<u>등에 대한 평가 결과</u>
<u><신 설></u>	<u>8.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u>
	<u>센터 지정의 적정성</u>
<u><신 설></u>	<u>9. 제31조의4 환자 중증도 분류</u>
	<u>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유형별</u>
	<u>진료 기능</u>
<u>6.·7. (생 략)</u>	<u>10.·11. (현행 제6호 및 제7호</u>
	<u>와 같음)</u>
<u>⑦·⑧ (생 략)</u>	<u>⑦·⑧ (현행과 같음)</u>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u>① (생 략)</u>	<u>① (현행과 같음)</u>
<u>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u>	<u>② -----</u>
<u>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u>	<u>-----</u>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 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 송체계 개선 4. (생 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신 설> 6. ~ 8. (생 략) ③ ~ ⑤ (생 략) 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 ②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 ---이송 · 수용 · 전원----- -----이송 · 수용 · 전원 -----분석----- -이송 · 수용 · 전원----- - 4. (현행과 같음) 5.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유형 별 진료 기능의 조정 6.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 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 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 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 기 준 9. ~ 11. (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다음
---	--

	<u>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u> <u>2.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격차 및 이송·수용·전원 체 계 분석</u> <u>3.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환자 의 이용 실태 및 의료 접근성 평가</u> <u>4.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관련 시설·장비 등의 공급 및 활용 실태</u> <u>5. 그 밖에 응급의료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u>
③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u>	④ <u>그 밖에 실태조사</u>----- ----- -----.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 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수집·분석하여 응급환자 의 발생, 분포, <u>이송</u>,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 ----- ----- -----<u>이 송·전원</u>----- -----

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4(이송·전원정보시스템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이송·전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
2.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가용 시설, 인력, 장비 및 응급환자 진료 능력
3.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불가 사

	<u>전고지 여부 및 사유</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 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받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공유된 정보는 응급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송·전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 ----- -----업무의 내용·결과, 제6조의2에 따른 수용불가 사전고지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

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③ ~ ⑤ (생략)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
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
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9. (생략)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
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이송 · 전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사용) -----

-

1. 2. (현행과 같음)

3.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 종사자 인력 기준 유지를 위 한 인건비 등 지원

4. ~ 10.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u><신 설></u>	<u>1. 응급환자의 수용률 및 최종 치료율</u>
<u><신 설></u>	<u>2. 응급환자 진료의 최종 성과</u>
<u><신 설></u>	<u>3.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의 성과 개선</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 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u>이송 하였을</u>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 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u>제6장 응급의료기관등</u>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항목별로 원가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적 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u> 제24조(이송처치료) ① ----- ----- ----- --<u>이송·전원하였을</u>-----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정 및 운영</u>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 ----- -----

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
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1. ~ 8. (생략)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 11.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

1. ~ 8. (현행과 같음)

9. -----이송·전원-----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의 설
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
급의료상황센터(이하 “중앙응
급의료상황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하여, 전원 조정, 응급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총
괄하여야 한다.

②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 단위의 응급환자 전원
조정 및 상황 관리

2. 전국 전원 조정 협력체계 구
축 및 운영

3.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요청에 대한 협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원 조정 및 응급의
료자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진료권별 전원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권역응
급의료상황센터(이하 “권역응
급의료상황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의 전
원 조정 및 상황 관리

2. 관할 권역 내 전원 조정 협
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관할 권역 내 119구급대의
이송 요청에 대한 협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단위의 전원 조
정 등에 관한 업무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3. (생략)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생략)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

1.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2. 3. (현행과 같음)

4. -----
-----전원-----

5.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심장·심혈관·뇌혈관질환자,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

및 정신질환자-----

② -----

-----절차 등은
적정 진료 가능 여부, 지역별
의료수요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

ㄱ.

1.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등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2. -----

한 이송

② (생 략)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 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생 략)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

-----전원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

1.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2.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

-----이송·전원·진료-----

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 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분류·선별기준 및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자의 이송·전원-----

-----이송·전원체계-----
-----고려하여야 한
다.

④ -----

-----전원-----.
-----제11조제4항-----
-----.

⑤ 그 밖에 환자의 중증도 분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

제32조(당직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기 위하여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은 제1항의 당직전문의등에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은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른 당직전문의등의 응급의료진료권별 배치 및 운영 기준은 시·도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종사

	<u>자의 당직일수, 주당근무시간, 당직 후 휴게시간, 당직수당 등 근무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u>
	<u>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② (생략)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③ ----- ----- ----- ----- ----- -----제17조제6 항-----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u>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u>	<u>제8장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등</u>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 ----- ----- -----.

1. ~ 4. (생략) 5. 응급환자의 <u>이송</u>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③ (생략)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u>이송</u> 2.·3. (생략)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u>이송</u> 5. (생략) ②·③ (생략)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u>환자이송</u>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생략)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	1. ~ 4. (현행과 같음) 5. -----<u>이송·전원</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 ----- -----. 1. -----<u>이송·전원</u> 2.·3. (현행과 같음) 4. ----- ----- ----- -----<u>인계</u>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 -----<u>환자이송·전원</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 -----
---	---

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생략)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이송 · 전원 및 응급처치-----

-----항공이송 · 전원-----

----있으며, 이 경우 응급의료 진료권별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이송 · 전원-----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송 · 전원-----이송 · 전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
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
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
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
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
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
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 체계) ① 응급환자
의 이송 및 전원은 제31조의 4
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
필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
하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
상황관리센터는 상호 협력하여
야 한다.

② 응급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
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한다.

③ 응급환자의 전원에 관한 사
항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가 담당

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지도의사) ① 구급차등의 운전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한다.

④ 그 밖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절차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응급환자 이송정보의 제공)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구급대원을 말한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2조(지도의사) ① -----

-----이송·전원-----

사용하는 경우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

-----이송·

전원-----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이송
· 전원-----
-----.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
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
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생략)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
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의2. ~ 7. (생략)

② ~ ⑤ (생략)

제60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

응급이송·전원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자격 정지 등) ①

1. 제6조제3항,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제5항

3의2.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② (생략)

③

1. 제6조제2항·제3항

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의2. ~ 3. (생략)

④ (생략)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2. (생략)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②·③ (생략)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

---기피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장과 응급의료종사자

1의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6항-----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

-----제공한-----

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u>면제할 수 있다.</u>	----- ----- ----- ----- -----면제한다.
--	---